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 · 궤도공사업협의회

수 신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참 조

제 목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입찰공고 정정 요청**

---

1. 상생과 신뢰, 소통과 협력으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금번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철도건설법에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궤도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한 것은 철도건설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위법한 공고로 판단되어 토목공사와 궤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공사입찰설명서 1부.
2. 참고 법령(철도건설법)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회 장 여 대 식

담당자 최미선 사무국장 김상준
시 행 : 철도·궤도 제 57 호 (2016. 05. 09.)
우 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8층 / http://www.krtca.or.kr
전화 02-3284-1120 전송 02-3284-1123 / 전자우편주소 sjkim@kosca.or.kr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입찰공고 정정 요청

2016. 5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입찰공고 정정 요청

❑ 건의내용

o 궤도공사는 철도건설법 제18조 제2항에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리발주하여야 함

❑ 발주현황 및 문제점

○ 입찰현황

- 공 고 명 :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 관리번호 : 1600081-00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 발주방식 : 최저가낙찰제 적용
- 기초금액 : 91,094,183,000원
- 추정가격 : 86,138,766,000원(부가가치세 0원)+4,955,417,000원(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토목공사업	91,094,183,000원	86,138,766,000원 (100.00%)

- 개찰일시 : 2016. 6. 3.(금) 15:00

○ 문제점

1) 본 입찰공고의 경우 토목공사에 철도·궤도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그러나 철도건설법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정의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 궤도, 전기, 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 및 철도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그 동안 부문별 분리발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입법한 사항임. 따라서 본 공사에 철도궤도공사를 포함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

3) 또한 철도건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었을 때 '분리발주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동 조항 단서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제목이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임.

4) **그러나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공사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발주한 것은 부당함.**

○ 개선방안

1) **철도건설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토목공사와 궤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붙 임

1. 공사입찰설명서 1부.
2. 참고 법령(철도건설법) 1부. 끝.

<붙임 2>

철도건설법 [법률 제13490호, 2015.8.11., 일부개정]	철도건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타법개정]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붙임 2>

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전문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13.8.6]	경우 [전문개정 2009.6.19]	